



언론중재법, 이렇게 개정되어야 한다

이 달 28일 언론중재법(정식 명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0번째 생일을 맞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이다. 언론환경에도 그 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10년 전 이야기지만,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에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안'과 같은 인터넷신문이 뉴미디어였다. 그랬던 인터넷신문이 올드해진 지 이미 오래다. 창의적 발상과 혁신적 IT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뉴스큐레이션' 서비스나 '편당뉴스' 하는,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뉴스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언론중재법은 포털뉴스, IPTV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한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시대를 맞아 급격히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걸맞은 제도로 하기에는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젊은 여성 두 사람이 근사한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다. 한참 동안 이어지던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남자'로 옮겨간다.

A: 한 5천 이상은 벌어야지 그래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B: 나를 위해서?

A: 차는 있어?

B: 차 종류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외제차는 아냐.

우리 시대, 돈을 잘 번다는 것은 미덕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다들 고액 연봉에 외제차를 꿈꾸지 않나. 그런데 이것이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라면 어떨까?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해당 방송사 인터넷게시판은 온갖 악플로 도배가 된다. 게다가, 비난을 유발한 문제의 멘트('연봉'과 '외제차')는 연출의 결과물이었을 뿐 실상 그녀들의 진심이 아니었다. 약간의 출연료를 받고 담당 PD의 지시에 따라 의도된 멘트를 날렸을 뿐인 그녀들은 그래서 억울하다. 심지어, 방송 촬영 직후 문제의 멘트를 빼달라고 했음에도 이들의 요청은 무시되었다.

문제 있는 방송과 악플로 인해 이종으로 상처 입은 두 사람은 피해를 구제 받고자 언론중재위원회의 문을 두드린다. 과연 이들이 입은 피해는 온전히 구제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반의 피해만 구제받을 수 있다. 문제 있는 '방송'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정정 또는 해명보도 정도가 가능하다. '악플'과 블로그·SNS 등에 게시되어 있는 방송 '영상 삭제'와 같은 문제까지 해결하기 원한다면 번거롭겠지만 별도의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환경 하에서 통합적 피해구제를 위해 법률 개정 필요

- 펌글,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도 가능해야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통합적 언론보도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곳에 모아놓으니 쉽고 편리했다. 그러나 앞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디지털시대의 도래로 인해 이야기는 또 달라지고 있다. 뉴스 소비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



로 이동하는 동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펄클, 댓글 등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고 당초 언론중재법이 의도했던 통합적 피해구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언론중재법을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로 정리해봤다.

첫째, 인격권에 기반 침해배제청구권을 명문의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허위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신문기사의 삭제를 인정했다(2010다60950). 이것은 기존의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손해배상에 비해 진일보한, 새로운 형태의 피해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복제나 전파가 쉬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 하에서 보다 활용도가 높은 권리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에 언론중재법 내에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반 침해배제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침해배제청구권은 허위이거나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한 기사, 사후적으로 부정확하게 된 보도-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상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 관해서 삭제·수정·보완 등을 청구하는 권리다. 이 권리는 그 속성상 인터넷에 기사가 게시되어 있는 등 침해가 계속되는 한 시간의 경과로 소멸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제척기간·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기사에 달린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 또한 언론조정중재에 포함시켜도 좋겠다. 앞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넷 환경 하에서 기사와 관련한 피해는 언론보도 그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 기사에 달린 댓글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이 경우, 피해자는 기사 외에도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까지 원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현행법 하에서 이중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댓글에 대해서는 법원 또는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에 각각 피해구제를 호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포괄적 원스톱서비스가 마련된다면 피해자의 번거로움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대법원(2008다53812)과 유럽인권재판소(Delfi 판결)는 명예훼손적 댓글을 방치한 관리자(포털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댓글 관련한 피해구제절차는 댓글 란 관리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댓글을 쓴 사람의 의견이 배제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댓글 게시자가 이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댓글과 마찬가지로 복제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또한 언론조정중재에 포함시켜야 한다. 복제와 전파가 용이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 하에서 복제 기사로 인한 피해 또한 큰 문제다. 특히, 원 기사의 위법성이 조정·중재·재판 등 공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다면 그와 동일한 복제 기사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피해구제절차가 간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인 절차에서 이미 위법성이 확인된 기사라고 한다면, 블로그나 카페·SNS 등에 게시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의 복제 기사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피해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포털검색 결과에서 문제된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는 검색됨으로써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다양한 피해구제를 시도했다 하더라도 검색될 수 없도록 하지 않으면 진정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색 결과에 문제 있는 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검색사업자에게 위법성이 확인된 복제 기사의 링크를 삭제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디지털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언론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으로 조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해본다.